#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294

발의연월일: 2025. 3. 24.

발 의 자 : 윤준병 • 신영대 • 박민규

문대림 • 박홍배 • 조계원

정동영 · 김한규 · 민병덕

박지원 · 김태년 · 김태선

허종식 · 송옥주 · 서영교

의원(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상업기업, 국내복귀 우수인력, 농 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중소기업의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함(안 제7조).
- 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의4).
- 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
- 라.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3조의2).
- 마. 내국법인 및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 바.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4조).
- 사.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안 제16조).
- 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의3).
- 자. 투융자집합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로 연장함(안 제27조).

- 차.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 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0조).
- 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데 따르는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1조).
- 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 면 등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3조 및 제63조 의2).
- 파.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함(안 제64조).
- 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7조의3).
- 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5조의8).
- 너.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2030년 12월 31 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9조의9).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을 각각 "2030 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을 각각 "2030년"으로, "2028년"을 "2033년"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	감면) ①
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u>2025년</u> 12월	<u>2030년</u>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	
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	
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	
율을 적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대한 세액공제) 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	

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 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 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 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 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 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 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 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 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 세법 시45조제2항에 따른 부 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 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 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

2030년
<del></del>

도로 한다.

- ② · ③ (생 략)
-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저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생략)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3.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

 ② · ③ (현행과 같음)
세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1. (현행과 같음)
2
<u>2030년</u>
3

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이하 "벤처투자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 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생 략)

-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5.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 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 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
_
_
_
_
_
_
_
_
_
_
_
_
_
1
_
_
_
_
_
_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 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 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 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6.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 융업자가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 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 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 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 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 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 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 ⑤ (생 략)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u>2030년</u> -	
6	
	 <u>203</u>
<u>0년</u>	
7	
<u>2030년</u>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 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 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 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 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 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 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1. · 2. (생략)

③ ~ ⑥ (생 략)

①
<u>2030년</u>
1.•2. (현행과 같음)
②2
② <u>2</u> <u>030년</u>
_
_
_
_
_
030년
030년
030년
030년

-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 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 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 이라 한다)에 <u>2025년</u> 12월 31 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 2.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 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네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
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1
<u>2030년</u>
2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 자대상기업에 <u>2025년</u> 12월 31 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 ② (생략)
- ③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 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 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생 략)

-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략)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u>2025년</u>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

<u>2030년</u>
3
<u>2030년</u>
<u>2030년</u>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 과 같음)
⑦ <u>2030년</u>

한다.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 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 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 세 · 강제징수비(이하 이 조에 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 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b>.</b>
8
<u>2030년</u>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u>2030년</u>
· 2030년
<u> </u>

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 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 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 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 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 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 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 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 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 제4호

<u>.</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u>2030년</u>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 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 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 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 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 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 ④ (생 략)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 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u>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에 취업하는 상략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② ~ ④ (생 략)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 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

<u>2030년</u>
· ① 4 (됨체기 가이)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
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F10202
<u>2030년</u>

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 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 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한다.

- 1. ~ 3. (생략)
- ② (생략)
-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 (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 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
행과 같음)
②
20

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③ ~ ⑥ (생 략)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② (생 략)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② (현행과 같
승)
③
<u>2030</u>
<u>년</u>

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 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 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 입하여야 한다.

#### ④ ~ ⑥ (생 략)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저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④ ~ ⑥ (현행과 같음)
세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
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u>2030년</u>
<u>2030년</u>
<u>2030년</u>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 1. • 2. (생략)

#### ② ~ ⑨ (생 략)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저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

2033년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
면 등) ①
<u>2030년</u>
<u>2030년</u>
2030년
2033년

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 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 략)
- ② ~ ⑦ (생 략)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기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 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 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 2. (생략)
- ② ~ ⑨ (생 략)
-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다음 각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 1. 2. (생략)
  - ② ~ ④ (생 략)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

1. <u>2030년</u>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0000
<u>2030</u>
<u>년</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

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 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 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 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 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 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 1. • 2. (생략)

#### ② · ③ (생 략)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지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u>2025년</u>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

에 대한 교	<b>가세특례</b> )	①	
	202	 )년	
	<u> </u>	<u>/ 1.'</u> 	
			•
1.・2. (현형	행과 같음	.)	
2 • 3 (	(현행과 7	알음)	
제99조의9(위	기지역	창업기업	에
대한 법인	세 등의	감면) ① -	
	<u> 2030년</u>		

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손 사업
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
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
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
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
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한다.

② ~ ⑩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